

587

기안자	서문행 政 務 課 李 鍾 貴	전화번호	341	공보	필요	불필요
보임	계장	인사 과장	내무 국장	제 / 부시장	시 장	
	(인)	(인)	(인)	(인)	(인)	
협조자	조직관리계장(인) 전형계장(인) 홍무과장(인)			보 존		
서명	스파계장(인) 행정과장			년 한		
기안월일	1966. 7. 23	시행월일	1966. 8. 16	통제관	결결 정서	기장
분류기호	서내인 202.2	문서번호	587	통제관	결결 정서	기장
경수참	유신 조 各 案 參 照 規 程 第 1 章			발 신		
제 목	서울特別市公務員昇進任用規程 制定					
제 1 案	수신: 内部決裁					
제 목	등전					
<p>4級以下公務員의 昇進任用은 昇進候補者 名簿 順位에 따라 5倍數 範圍內의 一定人員에 對하여 試驗을 賦課하여 有能한者를 昇進任用코자 別案과 같이 서울特別市公務員昇進任用規程을 制定코자 합니다</p>						
제 2 案	수신: 公報실장					
제 목	등전					

계
전
조
결
의
규
정
함
호

原案 對照 畢

876

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공무원승진임용주정이 제정되었으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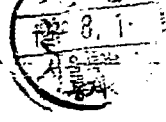
첨부: 서울특별시공무원승진임용주정 1부. 끝

부속

수신: 수신처 참조 발신: 시. 강

제목: 등전

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공무원승진임용주정이 제정공포되었기 등지함.

첨부: 서울특별시공무원승진임용주정 1부 

검열
1986 8. 16



{ 公 布 案 }

서울特別市公務員昇進任用規程을 制定하여 이에 公布한다.

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

兩統一九六六年 8月26日

서울特別市規程第 (8) 號

서울特別市公務員昇進任用規程

第一條 (目的) 이 規程은 四級以下公務員의 昇進任用에 關한 基準을 確立하여 人事行政의 公正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.

第二條 (昇進任用的 原則) 財政, 總務, 行政, 土不職科와 其他 市長이 必要하다고 認爲하는 職科의 昇進에 關하여는 이 規程에 依한 昇進試驗을 거쳐 昇進任用予定者를 決定된 者를 任用하여야 한다. 다만 緊急한 欠員補充이 必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第三條 (對象) 試驗은 昇進候補者 各等의 芝嶺位로부터 欠員數의 5 倍數範圍內의 者에 對하여 實施한다.

第四條 (試驗實施機關) 試驗은 서울特別市人事委員會에서 管掌 實施한다.

第五條 (試驗方法) ① 試驗은 列表科目에 對하여 實施하되 末題式 70%, 主題式 (單位業務改善) 30%로 하여 都合 100點 滿點으로 한다. ② 試驗科目中 實務는 主題式, 其他는 末題式으로 한다.

第六條 (昇進任用予定者 決定) ① 昇進任用予定者의 決定은 試驗成績와 昇進候補者 各等의 得點數를 合算하여 高得點者 順으로 하되 欠員數를 超過 할 수 없다.

② 同點者가 있을 境遇에는 昇進候補者 各等의 順位에 따른다.

第七條(準用規定)其他 이 試驗實施에 必要한 事項은 公務員任用試驗令의 規定에 따른다. 다만 同令 第三條(試驗의 一部免除)과 第二條(試驗의 合格決定)은 適用하지 아니한다.

別表 昇進任用試驗科目表

職列別	試驗科目		
行政職	① 行政法	② 行政學	③ 實務
財政職	① 經濟學論	② 財政學	③ 實務
稅務職			
土木職	① 應用力學	② 施工學	③ 實務

* 其他 職列은 必要時 隨時에 定한다.

附 則

이 規則은 公布한 日로부터 施行한다.

